

하남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3233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년 3월 일

발의자 : 정병용 의원

1. 제안이유

- 가. 최근 지방자치단체 간 문화·관광 경쟁이 심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수단으로 지역 축제의 전략적 육성이 강조되고 있음.
- 나. 하남시 도시브랜드 가치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제 정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, 그동안 축제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해 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.
- 다. 이에, 하남시가 주최·주관하거나 재정을 지원하는 축제에 대해 지원 기준과 운영 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과 정의(안 제1조~2조)
- 나. 시장의 책무(안 제 3조)
- 다. 축제 지원(안 제5조)
- 라. 축제사무의 대행 및 축제 참가비 등 징수(안 제6조~7조)
- 마. 안전관리(안 제8조)
- 바. 협력체계 구축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제정조례안 : 덧붙임
- 나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- 다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- 라. 기타사항 : 해당없음

하남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축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제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하남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하남시 관광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이 조례에서 “축제”란 관광진흥·지역 고유문화 창달·시민 화합 등을 목적으로 하남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추진하는 행사로써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고 개최 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행사를 말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축제로 보지 않는다.

1. 경연대회, 가요제, 기념식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
2. 음악회, 전시회, 미술제, 연극제 등 순수예술 행사
3. 주민화합, 경로잔치 등 단순 주민 위안 행사
4. 기타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

제3조(시장의 책무) 하남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축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① 축제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축제와 관련된 주요한 사항의 심의·평가는 「하남시 문화행사 심의·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축제 지원) ① 시장은 축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축제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람객에게 무료 체험 행사 및 그에 따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축제 기간 중 관람객 및 행사 관계자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축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유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무상 사용 또는 대부할 수 있다.

제6조(축제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·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사업·활동 또는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·단체·기관 등(이하 “수탁기관 등”이라 한다)에게 그 기획·운영·집행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축제 참가비 등 징수)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등은 축제 참가자로부터 행사 참가비, 시설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 대상 및 금액은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은 축제 행사 경비로 지출할 수 있으며, 축제 종료 후 잔액은 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.

③ 수탁기관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축제 참가자에게 징수한 행사 참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역화폐 등으로 참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안전관리) ① 축제 주관부서 또는 수탁기관 등은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② 축제 주관부서 또는 수탁기관 등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·이행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축제 주관부서 또는 수탁기관 등은 축제 개최에 따른 관련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,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다.

제9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축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문화·예술·관광 등 축제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서

1 「지역문화진흥법」

[시행 2022. 7. 19.] [법률 제18780호, 2022. 1. 18., 일부개정]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2 「문화예술진흥법」

[시행 2025. 11. 11.] [법률 제21091호, 2025. 11. 11., 일부개정]

제3조(시책과 권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(施策)을 강구하고,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·보호·육성하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.

3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

[시행 2026. 1. 2.] [법률 제21065호, 2025. 10. 1., 타법개정]

제66조(상인연합회) ① 상인회, 상점가진흥조합, 상인을 회원으로 설립한 법인·조합·단체 및 「상법」상 회사인 시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상인연합회(이하 “연합회”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

②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7. 7. 26.>

③ 연합회는 법인으로 하고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④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
1. 시장과 상점가 상인의 상권활성화
2. 시장과 상점가 상인의 공동 상품개발과 판로 확보
3. 시장과 상점가 상인의 구매·판매 및 물류에 관한 공동사업
4. 상인의 자조조직 육성 및 지원
5.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

6.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의 운영 및 제4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5. 5. 27.>

4

「하남시 문화행사 심의·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[시행 2025. 04. 09.] [2025. 04. 09조례 제2410호 일부개정]

제4조(기능)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·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·평가한다.

1. 문화행사의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
2. 문화행사의 내용과 개최 변경·조정, 예산에 관한 사항
3. 문화행사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
4. 문화행사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행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

(2026. 2. 현재)

연번	자치단체명	법 규 명	제 · 개정일	소관부서	비고
1	서울특별시 중구	서울특별시 중구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	2024-12-31	경제문화국 문화정책과	
2	광주광역시 광산구	광주광역시 광산구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	2024-09-30	문화교육국 관광육성과	
3	부산광역시 수영구	부산광역시 수영구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	2025-12-26	행정문화국 문화예술과	
4	대전광역시 중구	대전광역시 중구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	2025-04-14	문화경제국 문화체육관광과	
5	경기도 가평군	가평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	2023-09-13	경제산업국 문화체육과	
6	경기도 성남시	성남시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	2024-12-16	교육문화체육국 문화관광과	
7	경기도 동두천시	동두천시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	2024-12-31	복지문화국 문화예술과	
8	경기도 연천군	연천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	2021-12.-24	문화관광국 관광과	
9	경기도 양평군	양평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	2025-05-07	경제안전국 관광과	
10	경기도 의왕시	의왕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	2025-03-01	문화관광과	
11	인천광역시 강화군	강화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	2025-02-07	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	
12	경상남도 거제시	거제시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	2022-07-07	문화관광국 관광과	
13	전라남도 여수시	여수시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	2025-12-08	문화예술관광국 문화예술과	